

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5월 19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5월 11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5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5. 19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장애인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조성·운영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에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 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종사자수	정원	개원(예정)
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	강서구 마곡동로3길 6, 4층(마곡NY타워)	714m ² (216평)	12명	30명	'20.9.

- 사업명: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
- 위탁기간: 5년
- 위탁예산
 - 금년 337,500천원: 운영비(시비112,500천원/구비25,000천원),
기능보강비(시비200,000천원)
 - 매년 운영비 지원(시비 450,000천원, 구비 50,000천원)
- 위탁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위탁사무
 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·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, 교육 및 운영계획 수립평가
 - 발달장애인 보호, 예산계획 및 집행, 교직원 등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 - 발달장애인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등

2) 추진 일정

- 2020년 5월: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
- 2020년 6월: 위탁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0년 7월: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

- 2020년 8월: 위탁계약 체결 및 기능보강공사
- 2020년 9월: 개소 및 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7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이 동의안은 2020년 9월 개관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지난 5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의결된 사항으로,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아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차. 「입양특례법」

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
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
파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
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더. 「의료급여법」

러. 「기초연금법」

머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
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
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- 커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- 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퍼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2. "지역사회복지"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3. "사회복지법인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4. "사회복지시설"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5. "사회복지관"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6. "사회복지서비스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7. "보건의료서비스"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6. 근로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